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8
----------	-----

2019년 3월 6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월 25일, 양민규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1월 31일

3. 상정일자

○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3월 6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양민규 의원)

1. 제안이유

○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그동안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폐지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양민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8호로 발의되어 2019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면서 그동안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2000년 4월 18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 16786호로 제정되면서¹⁾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중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시행 2000. 4. 18] [대통령령 제16786호, 2000. 4. 18, 제정]

제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각급 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0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3853호로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운용하여 왔습니다.

○ 한편 지난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²⁾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어 교육활동 분쟁의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2000년 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는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 2013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공·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³⁾

2)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5. 6] [대통령령 제24346호, 2013. 2. 5, 일부개정]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2. 5.]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7년 4월 19일 자체 기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⁴⁾ 제정·운용하여 왔던바, 동 조례의 폐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 폐지에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6년여가 지나고 이미 조례와 별도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정책을 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동 조례의 폐지를 지연하였다는 것은 소관 사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겠는 바, 향후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법 적용에 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교육청도 동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0, 2019. 2.14.).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3) 참고로, 동 조례의 상위법이었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은 지난 2016년 8월 2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그 법령명이 변경되었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중등교육과-12987, 2017.4.19.)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